

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12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2. 6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정이유

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전국적으로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근거와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: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에게 위탁
-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: 6인이상 10인이하
-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 :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에 지원
- 이동도서관 직원임용
 - 임용절차 : 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
 - 인건비 지급 :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 준용
- 지휘·감독 : 구청장 및 시지부회장이 구지부회장을 지휘·감독

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새마을 이동도서관(이하 “이동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설치·관리) 이동도서관의 설치,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사하구 지부(이하 “문고지부”라 한다) 회장에게 위탁한다.

제 3 조(사업)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
2. 독서상담 및 자문
3. 국민독서 진흥운동
4.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홍보
5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
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.

제 4 조(운영위원회)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
2. 새마을 문고지도자 2인 이상
3.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

제 5 조(예산 및 결산)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하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사하구 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사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문고지부 회장은 사하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사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직원임용)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사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.

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.

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조(지도·감독) ① 사하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·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 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·감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